

연도별 재활용목표량 산정기준(제15조제2항 관련)

1. 1차 연도의 연도별 재활용목표량은 전기·전자제품의 출고량·수입량·판매량, 제품의 사용가능기간, 폐전기·폐전자제품의 예상발생량·분리수거량·재사용량, 분리수거 체계, 회수실적 및 재활용실적, 재활용시설 규모, 재활용기술의 개발 상황 등 회수 및 재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(이하 "회수 및 재활용 요인"이라 한다)을 고려하여 산정한다.
2. 2차 연도부터 5차 연도까지의 연도별 재활용목표량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.

$$[\text{전년도 연도별 재활용목표량} + (\text{장기 재활용목표량} - \text{전년도 연도별 재활용목표량}) \times \text{장기 재활용목표량 반영계수}] \times (1 + \text{조정계수})$$

※ 비교

- 1) "장기 재활용목표량 반영계수"란 장기 재활용목표량을 연도별 재활용목표량에 반영하는 정도를 말하며, 다음 표와 같다.

1차 연도	2차 연도	3차 연도	4차 연도	5차 연도
—	1/4	1/3	1/2	1

- 2) "조정계수"란 회수 및 재활용 요인을 고려하여 연도별 재활용목표량을 조정하는 정도를 말하며, -0.05부터 +0.05까지로 한다.

3.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경제 상황의 변동, 천재지변 등 회수 및 재활용 여건의 급격한 변화로 해당 연도의 연도별 재활용목표량을 달성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연도별 재활용목표량을 줄일 수 있다.